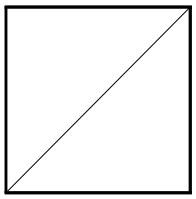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4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1. 14. (제 1 차)

의결사항

제이씨에셋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1. 14.

1. 의결주문

제이씨에셋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이씨에셋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자전거래 제한 위반

○ 甲 : 문책경고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2024년도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2024.6.13.) 심의필

<별지>

제이씨에셋자산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임직원에 대한 조치

○ 甲 : 문책경고

- 조치사유 : 자전거래 제한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5호, 제422조 제1항, 별표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2. 조치사유

가. 자전거래 제한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이하, '자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제이씨에셋자산운용㈜(이하 '제이씨에셋')은 20xx.xx.xx. 매도펀드(㉮펀드)의 신규CB 매입자금 확보를 위해 매도펀드로부터 매수펀드(㉯펀드)로 자전거래(약 XX억원)를 수행하였음

<붙임 1>

관계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2.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하 이 절에서 "관계인수인"이라 한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92. 제8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3. 10.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0525호)되어 2020.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2의2.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주권 관련 사채권 및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

2의3.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② 법 제8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2.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판매한 인수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85조제5호를 적용할 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자산(제224조제4항에 따른 미지급금 채무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매가격, 매매거래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법, 이 영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상의 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

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4-60조(관계인수인 등) ① 영 제87조제1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일 것
3. 제1호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4.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할 것

② 영 제87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Ⅲ. 금융투자부문

Ⅲ-7. 자전거래 제한 위반

1. 제재대상

① 거래대상 제한 위반

○ 허용된 자전거래 이외의 거래행위(자본시장법 제85조, 동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

○ 허용된 자전거래이나, 대상자산이 부도채권 등이거나 투자자의 이익,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행위 및 사모·공모 집합투자기구간의 거래제한 위반행위(자본시장법 제85조,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59조제1항, 제4항)

2. 제재기준

① 거래대상 제한 위반

○ 위반비율 및 위반금액 기준 중 중한 기준으로 제재

위반비율	위반금액	제 재 양 정	
		임직원	기 관
5% 초과	500억원 초과	직무정지(정직) 이상	기관경고 이상
1% 초과	200억원 초과	문책경고(감봉)	-
1% 이하	200억원 이하	주의적경고(견책) 이하	-

주 1) 위반비율=(위반거래금액합계/전체 집합투자재산)×100
전체 집합투자재산은 위반기간의 일평잔 기준(각 위반일의 잔고평균)
2) 위반금액 = 위반거래금액 합계

3. 가중 및 감경

○ 임직원 제재에 대하여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 할 수 있다.

○ 거래대상 제한 위반을 통해 이익을 편취하거나 대상자산이 부도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단순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거래대상 제한 위반시 위반규모나 위반금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공정가액(시장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시장 매각을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회사가 자체적으로 자전거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실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관에 대하여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금융투자검사3국
연 락 처	02-2100-2673	02-3145-7848